

# 2024년도 공·사립학교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례 주요사항



2025. 2.

# 목 차

I . 목적 및 필요성 .....	1
II . 2024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분석 .....	1
III . 분야별 감사 지적사례 .....	2
1. 부패취약분야 .....	2
1-1. 계약 및 시설공사 .....	2
1-2. 현장체험학습 .....	8
1-3. 방과후학교 .....	8
1-4. 학교운동부 .....	9
2. 교무 · 학사 .....	10
2-1. 학교 규칙 및 위원회 .....	10
2-2. 학교생활기록 .....	11
2-3. 학생평가 · 성적관리 .....	11
2-4. 생활지도 .....	13
2-5. 학교안전 .....	14
3. 복무 · 보안 · 행정일반 .....	15
3-1. 복무 .....	15
3-2. 보안 .....	17
3-3. 행정일반 .....	17
4. 학교회계 .....	18
4-1. 예 · 결산 .....	18
4-2. 세입 .....	20
4-3. 예산집행 .....	20
4-4. 학교발전기금 .....	24
4-5. 세입세출외현금 .....	24
5. 보수 및 물품 · 재산관리 .....	25
5-1. 보수 .....	25
5-2. 물품 · 재산관리 .....	26

# 2024년도 공·사립학교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례 주요사항

## I 목적 및 필요성

- 2024년도 관내 학교 종합감사 결과 주요·반복 지적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예방감사의 기능 활성화
- 교육행정 운영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교육지표 및 교육시책의 원활한 수행 지원

## II 2024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분석

- 감사기간 : 2024. 4. 2. ~ 12. 12.
- 감사대상 :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공·사립 중학교 28개교
- 분야별 지적 건수

유형별	부패취약 분야*	교무·학사	복무·보안·행정일반	학교회계	보수·물품·재산	계
지적사항	36	17	10	18	1	82
현지시정	15	10	10	39	17	91
합계	51	27	20	57	18	173

※ 부패취약분야 : 계약 및 시설공사, 현장체험학습, 방과후학교, 학교운동부

- 결과 처분 총괄

(단위 : 건, 명, 원)

지적 건수 (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원)		
	경고	주의	합계	회수	추급	합계
173	4	135	139	14,667,610	196,440	14,864,050

### III

## 분야별 감사 지적사례

### 1

## 부패취약분야 분야

### 1-1. 계약 및 시설공사

#### 분할 수의계약 체결

관련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li> <li>- 「1인 전적 제출 가능 수의계약 금액 기준 연장 알림」(재무과-25167, 2020. 12. 29.)</li> </ul>
지적 사항	<p>■ ○○중학교에서는 2021회계연도에 ‘예술교과 현대화사업(예산액 35,000,000원)’ 등 4개의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교부시기 및 공사 성질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통합 발주하여야 함에도 공사량을 분할하여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과 1인수의 계약을 체결함</p>

#### 시설공사 설계변경 절차 미이행

관련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li> <li>-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li> </ul>
지적 사항	<p>■ ○○중학교에서는 2021회계연도에 ‘옥상 방수 공사(금액 31,106,880원)’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내역 검토 및 현장 조사 결과 추가 시공 및 시공 방법 변경 등으로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인용하였음에도, 설계서 보완, 설계변경 검토 및 변경 계약 없이 변경 물량의 증감 내역을 상계 처리하여 기존 계약 금액으로 집행함</p>

#### 공사계약 원가계산 적용 소홀

관련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명시 및 정산)</li> <li>-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li> <li>-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정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li> </ul>
-------	---

지적 사항	<p>▣ ○○초등학교에서는 2021회계연도에 특별실(상담실 외 2실) 환경개선공사(계약금액 33,231,000원)를 집행하면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임에도 원가계산서에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계상하지 않음</p> <p>▣ ○○중학교에서는 2021회계연도에 ‘천장 교체 지정폐기물(석면함유) 철거 공사’ 외 1건의 시설공사를 집행하면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임에도 원가계산서에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계상하지 않고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임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으며, 건설공사(석면 철거 공사)임에도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음</p>
-------	--

### □ 무자격업체와 계약 체결

관련 근거	<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p> <p>-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및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p>
지적 사항	<p>▣ ○○중학교에서는 2022회계연도에 ‘축구부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계약금액 19,500,000원)’ 를 시행하면서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임에도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p> <p>▣ ○○중학교에서는 2022회계연도에 ‘학생자치 및 휴게공간 설치 공사(계약금액 14,960,000원)’ 를 집행하면서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원가계산서)에 산재·고용보험료 및 이윤 등의 제비율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반영되었음에도 제비율 조정 후 예정가격을 14,960,000원으로 결정하여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p>

### □ 공고기한 미준수

관련 근거	<p>-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p>
지적 사항	<p>▣ ○○초등학교에서는 2021회계연도에 ‘대형버스 진입을 위한 교문 확포장 공사(금액 29,508,000원)’ 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진행하면서 공고 기한(3일 이상)을 준수하지 않음</p>

## □ 정산 및 변경계약 소홀

<p>관련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의 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li> <li>-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li> </ul>
<p>지적 사항</p>	<p>■ ○○중학교에서는 ‘2023학년도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 공동구매 납품 계약’ 을 ▲▲▲익산점(대표 △△△)과 계약금액 87,584,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2023학년도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 공동구매 총액이 101,003,170원으로 계약 금액 대비 약 15.4% 증가되었음에도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증액금액(13,419,000원)에 대한 하자이행 보증서를 추가로 제출받지 않음</p>
<p>관련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li> <li>- 「전북방과후학교 운영계획·길라잡이」(전북교육 2022-002호)</li> </ul>
<p>지적 사항</p>	<p>■ ○○초등학교에서는 ‘2020~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영어) 업체위탁 용역 계약’ 을 운영하면서 2020~2021학년도에는 수강 학생 변동 등으로 계약 금액과 정산금액이 달라졌음에도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2022학년도에는 정산금액과 다르게 변경계약을 체결한 채로 최종 대가를 지급함</p>
<p>관련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li> <li>-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정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li> <li>- 「건설기술진흥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명시 및 정산)</li> <li>-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li> </ul>
<p>지적 사항</p>	<p>■ ○○초등학교에서는 2021~2022회계연도에 ‘상담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수도광열비 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입조치하였으며, 계약상대자가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환경보전비를 미사용하여 계약금액이 감액 조정(△28,140원)되었음에도 준공정산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환경보전비(25,270원)를 학교회계 계좌로 입금받은 후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함</p>

▣ ○○초등학교에서는 2023회계연도에 ‘도서관 및 상담실 리모델링 공사’의 1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준공 시 환경보전비 비적용 대상인 ‘부직포’ 사용 내역을 감액 정산(△113,480원)하지 않고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고용 보험료 납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액 정산(△31,840원)하여야 함에도 감액하지 않고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 □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소홀**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적 사항** ▣ ○○초등학교에서는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음  
▣ ○○초등학교에서는 2022회계연도에 ‘상담실 및 1학년 교실 공간혁신 시설공사’를 집행하면서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또는 적용제외 신고서)를 징구하지 않고 준공 시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지 않음

### □ **공사 서류 확인 및 작성 소홀**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및 제70조(하자 검사)

**지적 사항** ▣ ○○초등학교에서는 ‘2022년 학교자치복합공간 조성 공사(금액 28,600,000원)’ 계약을 집행하면서 착공계 접수 시 산업안전보건관리 사용계획서 제출을 확인하지 않음  
▣ ○○초등학교에서는 2021~2024회계연도에 ‘무장애통합놀이공간 구축 공사(금액 42,669,000원)’ 외 6건의 시설공사를 집행하면서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시설공사임에도 준공 완료 시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지 않음  
▣ ○○초등학교에서는 2022~2023회계연도에 ‘상담실 및 1학년 교실 공간혁신 시설공사(금액 30,683,000원)’ 외 3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징구하지 않고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임에도 준공검사조서 및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음

## □ 계약방법 적용 소홀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적 사항	<p>■ ○○중학교에서는 ‘2022학년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항공권 구매 계약’ 을 추진 하면서, 기초금액이 24,178,000원으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을 제출받거나 입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함</p>

## □ 하자보수보증 업무 소홀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및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지적 사항	<p>■ ○○중학교에서는 ‘2021~2022학년도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 공동구매 계약’ 을 ◆◆◆ 익산점(대표 ◇◇◇)과 체결하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학교주관 교복 공동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8조(납품 후 수선)에 1년간 품질 보증을 하도록 명시하였음에도 납품일에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를 징구 하지 않음</p> <p>■ ○○초등학교에서는 2021회계연도에 ‘수목 전지 공사(계약금액 4,246천원)’ 를 조경식재·시설물공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가 불가한 조경 공사임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로 대체하여 제출받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으로 잘못 설정함</p>

## □ 직접생산 여부 확인 소홀

관련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지정),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지적 사항	<p>■ ○○중학교에서는 1천만 원 이상 차량 임차 용역계약 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2022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용역계약(금액 11,800,000원)을 체결하면서 직접생산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음</p>

	<p>■ ○○초등학교에서는 2023학년도 4월 학사 운영에 필요한 차량 임차 용역 계약을 동일업체와 3건으로 나눠서 수의계약(계약금액 12,210,000원)을 체결하면서 직접생산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음</p> <p>■ ○○초등학교에서는 2021학년도 유치원 실내놀이터를 조성(금액 19,800천원) 하면서, 설계도면이 2종류 이상의 품목을 조합하여 설치하는 조합놀이대 임에도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p>
--	---

**□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소홀**

<b>관련 근거</b>	<p>- 「각급학교 물품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개선 알림」(재무과-17961, 2017. 8. 30.)</p> <p>-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정 안내」(재무과-15988, 2023. 7. 14.)</p>
<b>지적 사항</b>	<p>■ ○○초등학교에서는 2021, 2023회계연도에 ‘교수학습자료지원실 구축’ 외 2건의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 물품(3건, 70,500,000원)을 구매하면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없이 물품을 구매함</p> <p>■ ○○초등학교에서는 2022~2023회계연도에 ‘학교 칠판 교체 구입(금액 12,383,000원)’ 외 1건의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물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고, 2023회계연도에 ‘식생활관 학교급식 기구 구입(금액 17,100,000원)’ 을 집행하면서 제품 단가 5백만 원 이상 제품 선정 시 3개 이상 제품에 대해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품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평가표 없이 제품을 선정함</p> <p>■ ○○중학교에서는 2024회계연도에 ‘1, 3학년 칠판장 구입(금액 21,676,000원)’ 외 1건의 물품을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구입하면서 제품 단가가 5백만 원 이상 또는 제품별 구매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임에도 3개 이상 제품에 대해 평가표 없이 제품을 선정함</p>

## 1-2. 현장체험학습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소홀

관련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li> <li>-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8조(출결상황 관리 등)</li> <li>-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민주시민교육과 2520, 2022. 2. 15.)</li> </ul>
지적 사항	<p>■ ○○초등학교에서는 2022학년도에 학생 ○○○○의 교외체험학습 증빙 서류(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 ‘출석인정결석’ 처리를 하지 않았고, 같은 기간 학생 ◆◆◆은 증빙서류 없이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함</p> <p>■ ○○초등학교에서는 2023학년도에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15일)을 초과한 4일의 결석을 ‘미인정결석’으로 입력하여야 하나 ‘기타결석’으로 처리함</p> <p>■ ○○중학교에서는 2021학년도·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서류에서 2021학년도 1건, 2023학년도 3건의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가 누락되었으며, 결과 보고서가 없음에도 출석으로 인정함</p>

## 1-3. 방과후학교

###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소홀

관련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전북교육 2024-009호)</li> </ul>
지적 사항	<p>■ ○○중학교에서는 2022~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인위탁강사 선정을 위한 프로그램 능력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하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였고, 2023~2024학년도에는 평가위원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담당자를 평가위원에 포함함</p>

## □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소홀

관련 근거	-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계획」(유초등특수교육과-4234(2024. 3. 19.))
지적 사항	<p>■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 외 7명이 2022~2023학년도에 교과보충 수업을 지도하면서, 해당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복무(조퇴, 가족돌봄휴가, 연가) 및 국내출장(관내·외)를 사용하여 실제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지도강사 수당 750,000원을 과다 수령함</p> <p>■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 외 3명이 2023~2024학년도에 교과보충 수업을 지도하면서, 해당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복무(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조퇴) 및 국내출장(관내·외)를 사용하여 실제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지도강사 수당 210,000원을 과다 수령함</p>

## 1-4. 학교운동부

### □ 학교운동부 운영 소홀

관련 근거	<p>-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소위원회)</p> <p>-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p> <p>-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전북교육 2024-131호)</p>
지적 사항	<p>■ ○○중학교에서는 2021~2024학년도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계획을 심의하지 않았으며, 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운동부를 운영함</p>

### □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소홀

관련 근거	<p>-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칙」 제11조(채용절차 등), 제16조(심사위원 선정 등) 및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회피 등)</p> <p>-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p>
지적 사항	<p>■ ○○중학교에서는 2021~2024학년도 매년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채용하면서 서류 및 면접 심사에서 심사위원으로 학교장과 담당교사가 참여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p>

## 2-1. 학교 규칙 및 위원회

☐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미준수

관련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li> <li>-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자치 조례」 제10조(교무회의의 기능)</li> <li>- 「2021학년도 중·고등학교 학교규칙(학칙) 제·개정 방법 변경」(학교교육과5597, 2021. 4. 9.)</li> </ul>
지적 사항	<p>☐ ○○중학교에서는 2023학년도 학교규칙을 개정하면서 담당자 주관으로 발의된 개정안을 1회 가정통신문 발송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최종 시안을 마련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p> <p>☐ ○○중학교에서는 2023학년도 학교규칙을 개정하면서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데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으며,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최종 시안을 마련함</p>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관련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회의 소집) 및 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li> <li>- 「학교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li> <li>-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li> </ul>
지적 사항	<p>☐ ○○초등학교에서는 2021~2023학년도에 회의 개최 7일 전에 개최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건 처리결과 이송, 회의결과 홍보 등에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회의록 공개를 소홀히 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단위과제 기록물 일부를 보존하지 않음</p>

## 2-2. 학교생활기록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소홀

관련 근거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학생생활기록부의 기재)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지적 사항	▣ ○○초등학교에서는 2023학년도 익산영재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2명의 학생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항목에 이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음

## 2-3. 학생평가 · 성적관리

### 평가계획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미심의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전라북도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지적 사항	▣ ○○초등학교에서는 2021학년도 초등 성장평가계획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생 평가를 시행함 ▣ ○○중학교에서는 2021~2024학년도 과목별 연간 평가계획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 내부결재만으로 시행함

### 수행평가 업무처리 소홀

관련 근거	-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관리방안」 (전북교육 2023-220호)
지적 사항	▣ ○○중학교에서는 2023학년도 평가 규정을 정함에 있어 ◇◇교과에서 총괄 평가 계획 점수 배점(15점)과 세부 평가 계획의 점수 배점(10점)을 다르게 정함

**□ 학업성적 평가 업무 수행(지필평가 재시험) 소홀**

<p><b>관련 근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li> <li>-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관리방안」(전북교육 2023-220호)</li> <li>- 「학생평가 운영 및 유의사항 안내」(중등교육과-2415, 2023. 4. 13.)</li> </ul>
<p><b>지적 사항</b></p>	<p>▣ ○○중학교에서는 2023학년도 2학기 2차 고사 3학년 ★★교과 지필평가 13번 문항에서 복수 정답이 4개로 문항 오류가 발생하여 재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교과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한 사실이 있으며, 심의 결과 공지와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해당 교사 조치 결과를 포함한 사안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지 않음</p>

**□ 특수교육운영 개별화교육계획 및 지원팀 운영 소홀**

<p><b>관련 근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li> <li>- 「전북 특수교육 운영 계획」</li> <li>- 「전라북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li> </ul>
<p><b>지적 사항</b></p>	<p>▣ ○○중학교에서는 2022학년도 2학기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2022학년도 2학기 및 2023학년도 1학기에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2021~2023학년도에 개별화지원팀을 구성하였으나 회의개최, 회의록 작성 등 실제적 운영을 하지 않았고, 2021~2022학년도에 상급학교 진학 시 개별화교육계획을 송부하지 않음</p>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소홀**

<p><b>관련 근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체육진흥법」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제13조의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li> <li>-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전북교육 2024-131호)</li> <li>-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매뉴얼」(문예체건강과-3045, 2024. 3. 5.)</li> <li>- 「건강체력교실 운영 길라잡이」(문예체건강과-3206, 2024. 3. 6.)</li> </ul>
---------------------	---

지적 사항	<p>■ ○○중학교에서는 2022년 건강체력평가(PAPS) 실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학생건강체력평가(PAPS)를 실시하였고, 2022~2023학년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계획을 수립·심의 받지 않음</p> <p>■ ○○초등학교에서는 2021~2023학년도 건강체력교실 운영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p> <p>■ ○○초등학교에서는 2021~2024년도에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실시 결과 저체력(4~5등급)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이 있었음에도 건강체력교실 운영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2021~2024년까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계획에 여학생 선호종목 조사 및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음</p>
----------	---

## 2-4. 생활지도

### 학교폭력,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운영 소홀

관련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예방교육)</li> <li>-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li> <li>-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li> <li>- 「가정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 등)</li> </ul>
지적 사항	<p>■ ○○초등학교에서는 2023년도 학교폭력예방교육, 2021년도 성폭력 예방교육 및 2021~2023년도 가정폭력 예방교육실시 계획에 학교교육과정, 학년(급)교육과정 또는 학교행사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교육 운영 내용이나 결과 확인이 어려움</p>

##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서류관리 소홀

관련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li> <li>- 「학교폭력(아동학대) 사안처리 가이드북」</li> </ul>
지적 사항	<p>□ ○○중학교에서는 2021학년도에 학교폭력 전담 기구 구성 시 학부모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심의 후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않았고, 접수대장 및 가해 학생 조치사항 관리(유보)대장을 관리하지 않았으며, 사안 관련 서류 일체(사안조사 보고서, 자체해결동의서, 심의결과 보고서)도 관리 보관하지 않음</p>

## □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 처리 소홀

관련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및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li> <li>- 「학교폭력(아동학대) 사안처리 가이드북」</li> </ul>
지적 사항	<p>□ ○○초등학교에서는 2021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 2건을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하였으나, 심의결과 보고서를 갖추지 않음</p>

## 2-5. 학교안전

### □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소홀

관련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관리 조례」 제5조(과학실관리)</li> <li>-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li> </ul>
지적 사항	<p>□ ○○초등학교에서는 2022~2023학년도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계획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고 과학교사 및 과학실 지원 인력 대상으로 활용교육을 별도 수립·시행하겠다고 계획하였으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지 않고 활용교육을 실시하지 않음</p>

## 3-1. 복무

## □ 공가 사용 부적정

관련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6(공가)</li> <li>-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제19조(공가)</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47조(공가)</li> </ul>
지적 사항	<p>■ ○○중학교에서는 교직원 ☆☆☆ 외 2명이 ‘건강검진’ 을 사유로 2021년, 2023년에 공가를 상신하고 결재를 득하였으나, 건강검진 실시확인서와 대조한 결과 실제 건강검진은 상설일과 다른 일자에 건강검진을 받아 복무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고 연가보상비(120,170원) 및 연차수당(137,600원)을 과다 지급 받음</p> <p>■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이 ‘건강검진’ 을 사유로 2021. 8. 19.(목) 공가를 상신하고 결재를 득하였으나,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와 대조한 결과, 상신일과 다른 2021. 7. 27.(화)에 건강검진을 받아 복무를 부적정하게 사용함</p> <p>■ ○○초등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 ★★★이 ‘건강검진’ 을 사유로 2021. 8. 30.(월) 공가를 상신하고 결재를 득하였고, 건강검진 수검 확인서와 대조한 결과 공가 상신일에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은 2021년도 국가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므로 공가를 사용하여 건강검진을 해서는 아니되어 해당일의 공가 복무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고 연차수당 43,690원을 과다 지급 받음</p> <p>■ ○○초등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 ◆◆◆이 ‘A형간염 예방접종’ 을 사유로 2021. 8. 10.(화)에 공가를 상신하고 결재를 득하였으나, ‘A형간염 예방접종’ 은 국가일반건강검진 사유가 아니므로 해당일의 공가 복무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여 연차수당 94,660원을 과다 지급 받음</p> <p>■ ○○중학교에서는 교사 ▨▨▨가 ‘건강검진’ 을 사유로 2023. 10. 25.(수) 공가를 상신하고 결재를 득하였으나, 건강검진이 아닌 일반 진료(갑상선·복부 초음파 등)를 받아 복무를 부적정하게 사용함</p>

## □ 병가 사용 부적정

<p><b>관련 근거</b></p>	<p>-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병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45조(병가)</p>
<p><b>지적 사항</b></p>	<p>■ ○○초등학교에서는 교직원 ■■■ 외 3명이 2021~2022년 병가를 사용하면서 연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동일한 사유의 병가를 기관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에 맞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가를 활용하여야 함에도 병가로 승인하여 연가보상비(연차수당) 677,350원을 과다 지급받음</p>

## □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

<p><b>관련 근거</b></p>	<p>-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특별휴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50조의2(특별휴가)</p>
<p><b>지적 사항</b></p>	<p>■ ○○초등학교에서는 지방공무원 ★★★이 2021. 12. 28.(화)에 ‘막내고모 사망’을 사유로 경조사휴가를 상신하고 결재를 득하였으나 해당 사유는 경조사 휴가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복무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연가 보상비 108,050원을 과다 지급 받음</p> <p>■ ○○초등학교에서는 2022~2024년도에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 등 4명이 학습휴가를 사용하면서 휴가 목적을 기재하지 않거나, ‘자녀 학습상담’, ‘시댁 방문’ 등 평생 학습의 취지에 맞지 않게 복무를 사용함</p>

### 3-2. 보안

####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 보관 처리 소홀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련 제477호)」 제20조(자료의 제공)
지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에서는 2023학년도 졸업예정자 91명의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 를 징구하였으나, 보관 사실을 내부결재 등을 통해 기록하지 않음</li> </ul>

####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소홀

관련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li> <li>-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준수 철저」(미래인재과-12606, 2020. 7. 6.)</li> <li>- 「학교 졸업앨범 제작 시 교직원 동의 절차 준수」(미래인재과-18642, 2020. 10. 16.)</li> </ul>
지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에서는 2022~2023학년도 졸업앨범 제작 시, 교직원 및 학생의 성명, 사진 등 개인정보를 수탁업체에 위탁하면서 표준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등을 계약문서로 작성하지 않았고, 교직원의 개인정보 제공동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li> <li>■ ○○중학교에서는 ‘2022학년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항공권 구매 계약’ 을 추진하면서 항공권 발권 시 학생 및 인솔 교사의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수탁업체에 위탁하면서 표준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특수조건 등을 계약 문서로 작성하지 않음</li> </ul>

### 3-3. 행정일반

#### 문서 접수 및 등록 소홀

관련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li> <li>-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li> <li>-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5절(계약의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사계약의 이행 마. 착공·공정보고</li> </ul> </li> </ul>
지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에서는 2023~2024회계연도에 ‘에듀테크실 외 3개실 환경 개선공사’ 외 5건의 시설공사를 집행하면서, 제출받은 착공계를 문서등록 대장에 등재하지 않음</li> </ul>

## 4-1. 예·결산

## □ 학교(교비)회계 예산편성 업무 처리 소홀

<p>관련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li> <li>- 「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2조(예산안의 편성), 제15조(추가경정예산) 및 제56조(예산·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li> <li>-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li> <li>-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li> <li>-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2조(예산편성 요령), 제16조(예산편성절차), 제18조(추가경정예산) 및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등)</li> <li>- 「교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li> </ul>
<p>지적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에서는 2022~2023회계연도 본예산 편성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2022회계연도 일반업무추진비 편성 한도액을 170,000원 초과하여 편성·집행함</li> <li>■ ○○초등학교에서는 2022회계연도 간주처리예산을 2023. 3. 9.자에 확정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였고, 예산서 공개 기한을 초과하거나 공개하지 않았으며, 2022~2023회계연도 목적사업비 집행 잔액이 10만원 이상임에도 사업 부서에 반납하지 않음</li> <li>■ ○○초등학교에서는 2021~2022회계연도 간주처리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 목적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1회계연도 목적사업비 집행 잔액을 명시이월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li> <li>■ ○○초등학교에서는 2022~2023회계연도 간주처리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수익자부담경비 등을 편성하였고, 2022회계연도 간주처리예산을 회계연도가 종료된 2023. 3. 15.에 편성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였으며, 2023~2024회계연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음</li> <li>■ ○○초등학교에서는 2022~2024회계연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학교구성원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 학교 구성원의 예산편성 요구 사업이 있었음에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요구 사업을 설명하고 그 내용을 회의록에 명기하지 않음</li> </ul>

	<p>▣ ○○중학교에서는 2022회계연도에 간주처리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요건에 맞지 않는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입세출예산안 확정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세입세출예산안 확정 절차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일에 세입세출예산안을 확정함</p>
--	--

**□ 예산과목 미준수**

<p><b>관련 근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3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li> <li>-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li> <li>-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li> <li>- 「사학기관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li> </ul>
<p><b>지적 사항</b></p>	<p>▣ ○○중학교에서는 2021~2024회계연도에 ‘대학생 교육실습생 운영비’를 편성하면서 기타공공지원금이 아닌 기타행정활동수입으로 편성하여 세입예산과목을 준수하지 않음</p> <p>▣ ○○중학교에서는 2021회계연도에 교장실 제습기(금액 509,000원)를 구입하면서 비품구입비 성격인 경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등 2021~2024회계연도에 총 117건, 합계 178,058,430원을 집행하면서 세출과목을 준수하지 않음</p>

**□ 목적사업비 집행 잔액 처리 소홀**

<p><b>관련 근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li> </ul>
<p><b>지적 사항</b></p>	<p>▣ ○○초등학교에서는 2021~2022회계연도에 조리종사원 대체인건비 외 1건의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이 10만 원 이상 남았음에도 사업부서에 반납하지 않음</p>

## 4-2. 세입

### 학교(교비)회계 세입금 관리 소홀

<p>관련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li> <li>-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수입일계표의 작성)</li> <li>- 「사학기관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li> </ul>
<p>지적 사항</p>	<p>▣ ○○중학교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작성한 수입일계표 총 292건 중 39건의 수입일계를 30일 이상 최대 145일 지연하여 작성하였고, 2023학년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를 징수하면서 교비 계좌에 입금된 111,850원을 수납처리하지 않고 절차 없이 반환하였으며 2024. 7. 25. 교비 유휴자금 정기예금 만기 해지 및 재예치하면서 예금이자 1,184,400원을 수납처리 하지 않음</p>

## 4-3. 예산집행

###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p>관련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li> <li>-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li> <li>-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li> </ul>
<p>지적 사항</p>	<p>▣ ○○초등학교에서는 2022회계연도에 ‘교직원 경조사비 지급’ 건을 집행하면서 축의·부의금품 지급 대상이 아닌 학교장 본인에게 부의금을 지출하였고, 2023회계연도에 ‘스승의 날 행사 물품(간식) 구입’ 외 1건을 집행하면서 지출 내역에 사용일자, 사용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임에도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서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음</p> <p>▣ ○○초등학교에서는 ‘2022학년도 2학기 ☆☆☆ 세미나 및 ★★★★★ 추진을 위한 워크숍 식비’ 건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1인당 집행단가를 초과한 47,360원을 지급하면서 총 330,000원을 초과하여 집행하였고, 2022~2023회계연도에 ‘가정의 달, 스승의 날 교직원 간담회 실시’ 외 1건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건당 50만 원 이상임에도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음</p>

## □ 여비 집행 소홀

<p>관련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li> <li>-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li> <li>- 「중등학교 순회교사 운영 계획」(교원인사과-1273, 2024. 2. 1.)</li> </ul>
<p>지적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에서는 2021~2023년도 ‘응급처치 의무교육’ 외 31건의 근무지 내 공무원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 및 임차차량을 이용한 여비에 대하여 1만 원을 감액하지 않았고,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의 실비 지급에 있어서 운임과 식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 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정산없이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공무를 수행하는 출장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출장비를 잘못 지급함</li> <li>■ ○○중학교에서는 2022~2024년도 근무지 내 공무원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 및 임차차량을 이용한 여비에 대하여 1만 원을 감액하지 않았고,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 여비가 지급되었음에도 중복 지급하였으며,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의 실비 지급에 있어서 운임과 식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 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정산없이 지급하여 출장여비 224,000원을 과다 지급함</li> <li>■ ○○중학교에서는 2022~2024년도에 ‘순회 수업’ 과 관련하여 총 35건의 근무지 내 순회교사 여비를 지급하면서 순회 대상 학교 거리가 왕복 12km 미만인데도 2만 원을 지급하여 출장여비 350,000원을 과다 지급함</li> <li>■ ○○중학교에서는 2023~2024년도에 근무지 외 출장 여비를 지급하면서 공용차량 등을 이용한 여비에 대하여 일비의 전액을 지급하였고, 1일 이내에 2회 이상의 출장 여비에 대해서도 일비의 정액분을 초과하여 지급함</li> <li>■ ○○초등학교에서는 2021~2023년도에 근무지내 출장 및 교육훈련 여비를 지급하면서 근무지내 출장 시 공용차량 등을 이용한 여비에 대하여 1만 원을 감액하지 않았고, 교육훈련 여비에 대하여는 등록일 및 수료일 외 기타일을 포함한 전체일수에 해당하는 일비 전액을 지급함</li> </ul>

## □ 지출원인행위 결재 소홀

관련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회계법」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및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 및 분임)</li> <li>-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2조(정의),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제67조(지출원인행위의 정의)</li> <li>- 「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5조(지출원인행위)</li> <li>- 「직무대리규정」 제6조(직무대리의 운영)</li> </ul>
지적 사항	<p>▣ ○○초등학교에서는 ‘2021학년도 유치원 여름방학중 방과후과정 중 식비’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주무관이 최종 결재를 처리하는 등 2021~2023회계연도에 총 25건, 합계 17,191,250원의 학교회계를 집행하면서 직무대리 절차없이 학교장이 아닌 주무관, 행정실장, 교감이 지출원인행위를 결재함</p>

## □ 신용카드 사용 소홀

관련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li> </ul>
지적 사항	<p>▣ ○○초등학교에서는 2021~2023회계연도에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계좌로 1~5일 지연 입금하여 총 4회 연체로 4,506원이 발생하였고,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를 연 1회 이상 학교회계로 세입조치하여야 함에도 2020학년도(2021. 2. 1.)에 세입조치 한 이후 감사 당일 현재까지 법인카드 포인트(47,409점)를 학교회계에 세입조치하지 않음</p>

## □ 재정보증보험 가입 업무 소홀

관련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칙」 제2조(정의) 및 제3조(재정보증)</li> <li>- 「지방회계법」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li> </ul>
지적 사항	<p>▣ ○○중학교에서는 재정보증 보험기간을 6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설정하였으므로 보험만료일인 5월 31일 이전에 재정보증보험을 갱신하여야 하나, 2023회계연도에 보험만료일로부터 37일 지체하여 2023. 7. 7.에 보증기간을 소급하여 보험증권을 발급받음</p>

▣ ○○중학교에서는 매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직위포괄 계약 방식으로 갱신하면서 분임출납원인 임시회계출납원은 3천만 원 이상으로 재정보증 설정하여야 하나, 2021~2024회계연도에 1천만 원으로 설정함으로써 설정 한도액에 미달하여 가입함

### □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소홀

관련 근거	-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지적 사항	▣ ○○초등학교에서는 2021~2022회계연도 학교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지연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음

### □ 수익자부담경비 정산내역 공개 소홀

관련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5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지적 사항	▣ ○○중학교에서는 2021~2022회계연도에 ‘졸업앨범비’ 및 ‘우유급식비’ 수익자 부담경비를 집행하면서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정산 및 결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음

### □ 국고금 관리 소홀

관련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계산)
지적 사항	▣ ○○중학교에서는 교비회계 및 학교발전기금회계 계좌를 운영하면서 퇴직연금 관리 수수료 청구에 따른 원 단위 지급 등으로 감사 당일 현재까지 10원 미만의 끝수를 계산하여 관리함

#### 4-4. 학교발전기금

##### 학교운영위원회 인계인수 소홀

관련 근거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
지적 사항	▣ ○○중학교에서는 2022학년도 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인 운영위원장이 변경되었으나, 사무인계인수를 하지 않음

##### 장학금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업무 소홀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지적 사항	▣ ○○초등학교에서는 2021~2023학년도 졸업식 장학금 수여 대상자(43명, 17,200,000원)를 선정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 4-5. 세입세출외현금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관련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8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14조(세입세출외 현금액의 관리)
지적 사항	▣ ○○중학교에서는 2024. 3. 22. 경비원 ♀♀♀의 2023학년도 퇴직금(1,378,650원)을 적립하면서 그 퇴직금과 세입세출외현금 퇴직연금(DB) 계좌에 남아있는 이자를 상계처리하는 과정에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서 그 금액만큼을 퇴직연금(DB) 계좌에 실제로 이체하여 세입세출외 계좌와 장부상 금액 사이에 차액(△434,800원)이 발생하였고 확정급여형(DB) 계좌에 퇴직금 1,378,650원을 과다 보관함

5

보수 및 물품·재산 관리 분야

5-1. 보수

☐ 신분변동자 보수 지급 소홀

관련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보수계산) 및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지적 사항	<p>☐ ○○중학교에서는 2021년 교사●●●이 육아휴직(2021. 12. **.~2023. 2. **.*)으로 인사변동이 있어 2021년 12월은 월액이 아닌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1,620,600원을 과다 지급함</p> <p>☐ ○○초등학교에서는 2021년 교사☆☆☆는 해외동반휴직(2021. 8. **.~2022. *. **.), 2023년 교사○○○는 질병휴직(2023. 5. **.~2024. *. **.), 교사■■■는 육아휴직(2023. 5. **.~2023. *. **.*)으로 인사변동이 있는 해당 월은 월액이 아닌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야 함에도 1,800,120원을 과다 지급함</p>

☐ 교육공무직원 보수 지급 소홀

관련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 「교육공무직원 종합운영계획」
지적 사항	☐ ○○초등학교에서는 2022학년도 교육공무직원 근로계획서(방학 중 비상근무 직종)에 따라 2022년 8월 초등돌봄실무사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해당 월 유급일수 23일을 25일로 잘못 산정하여 급여 총 69,290원을 과다 지급함

☐ 교원연구비 및 학교운영수당 지급 소홀

관련 근거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지적 사항	☐ ○○중학교에서는 교사☆☆☆이 2022학년도 1학기(2022. 3. 1.~8. 31.)에 “4호 파견(◇◇대학교 중등영어심화연수)” 으로 6개월간 교원연구비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교원연구비 360,000원을 과다 지급함

▣ ○○초등학교에서는 지방공무원 ㉹㉹㉹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2호에 따른 정년퇴직예정자 준비교육 대상자로서 학교운영수당 미지급 대상이나 6개월분 180,000원을 초과 지급하였고, 교사 ▶▶▶(질병휴직: 2021. \*. \*.~2022. \*. \*\*)에게 교원연구비 346,500원을 초과 지급함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소홀**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적 사항	▣ ○○중학교에서는 2022~2023년도 퇴직자 2명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53,320원) 및 초과분(43,120원)을 지급하지 않음

**□ 연가보상비 지급 소홀**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연가보상비)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적 사항	▣ ○○초등학교에서는 지방공무원 ○○○ 외 이 2021~2022년도 복무 상신 시 시스템에서 자동 공제되는 점심시간(12:00~13:00)이 연가 사용 시간에서 누락 (7건, 6시간 30분)되어 연가보상비 185,570원을 초과 지급 받음

**5-2. 물품 · 재산관리**

**□ 물품 · 재산관리 소홀**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제60조(재물조사 등) 및 제66조(물품관리 사무의 전산화)
지적 사항	▣ ○○초등학교에서는 제본천공기 외 8건(금6,858,600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감사 당일까지 물품관리대장에 미등재함 ▣ ○○초등학교에서는 2021~2023학년도에 노트북 등 고가이면서 휴대하기 용이한 물품에 대하여 출납대장을 작성하지 않음

## □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소홀

<p>관련 근거</p>	<p>-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p>
<p>지적 사항</p>	<p>■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강당을 개방하면서,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개시일 이전에 전액 납부(사용료 50만 원 이하)하여야 하나, 사용료를 분납하여 납부 하도록 함</p>

## ※ 관련 근거

### □ 분할 수의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4., 2015. 8. 19.,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24.>

③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1. 24.>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4.,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 □ 시설공사 설계변경 절차 미이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9. 6. 25.>

② 입찰참가자가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제15조제7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개정 2011. 9. 15.>

③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그 전에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④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⑥ 제5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5. 22.>

- ⑦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⑨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전문개정 2010. 7. 2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일부개정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할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 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후략>

**□ 공사계약 원가계산 적용 소홀**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④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9. 4. 30.>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3. 8. 6., 2020. 6. 9.>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⑥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2. 3., 2019. 4. 30.>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9. 4. 30.>

⑧ 둘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발주자와 약정한 후 그 건설사업자 중에서 발주자에게 약정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567호, 2024. 6. 11. 일부개정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7., 2013. 3. 23., 2014. 2. 5.>

②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7., 2020. 2. 18.>

[전문개정 2007. 12. 28.]

## 건설기술진흥법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2. 친환경 건설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
-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④ 환경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62호, 2024. 7. 10. 일부개정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 ②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8. 6. 18., 2020. 3. 18.>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6. 18.>

## □ 무자격업체와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 가. 가스시설공사
  - 나. 삭제 <1998.12.31>
  - 다. 철강구조물공사
  - 라. 삭도설치공사
  - 마. 승강기설치공사
  - 바. 철도·궤도공사
  - 사. 난방공사
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1. 1., 2013. 3. 23.>

1.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광고기한 미준수

### 건축사법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①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할 때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맞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⑥ 건축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건축사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30.]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중략>

나. 수의계약 요령

-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제6절”에 따른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 □ 정산 및 변경계약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전문개정 2009. 2. 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9. 6. 25.>  
 ② 입찰참가자가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제15조제7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개정 2011. 9. 15.>  
 ③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그 전에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④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⑥ 제5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5. 22.>  
 ⑦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⑨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전문개정 2010. 7. 26.]

## □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 공사 서류 확인 및 작성 소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2023. 10. 5. 일부개정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 발주자는 도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17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

2. 재질·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④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한 변형, 파손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3. 8. 6.>

[전문개정 2009. 2. 6.]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 □ 계약방법 적용 소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00호, 2024. 7. 16. 일부개정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1., 2011. 10. 28., 2011. 11. 23., 2012. 5. 14., 2013. 12. 30., 2014. 5. 22., 2015. 12. 31., 2018. 12. 4., 2019. 9. 17., 2020. 5. 1., 2020. 9. 29., 2020. 12. 8., 2021. 2. 2., 2021. 7. 6., 2023. 1. 3., 2023. 4. 11., 2023. 11. 16., 2024. 5. 7.>

<중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후략>

### □ 하자보수보증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금액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27호, 2024. 12. 6. 일부개정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 2024. 12. 6.>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제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1년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4. 「전기공사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5.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
6. 「소방시설공사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간
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기간
8.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1년

② 영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공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5.]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 항만, 석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100분의 3
6. 수리, 가공, 구매, 용역: 100분의 2

② 영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4. 2. 7., 2021. 1. 7.>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11. 5.]

**직접생산 여부 확인 소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45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7. 26.>

③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의 공동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20. 2. 4.>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

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실적, 기술력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 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7. 26.>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산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⑤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30., 2013. 3. 23., 2017. 7. 26.>
  1.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포괄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
  3. 영위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포괄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⑥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 3. 30.>
  1. 상호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 ⑦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절차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30., 2013. 3. 23., 2017. 7. 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40호, 2024. 10. 18. 일부개정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추정가격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0. 2. 18.>

-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7. 2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③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7. 21., 2011. 6. 27.>
  1.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자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주요 설비 및 장비
  2. 최소 공장 면적
  3. 최소 필요 인원
  4. 필수 자격
  5. 그 밖에 필수 원자재 등 제품별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사항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품조달계약 전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 ☐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소홀

###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정

재무과-15988(2023. 7. 14.)

#### IV.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 1. 대상

- 가. 공립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 나.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 2. 대상 금액: 추정가격 1천만 원(1회 구매 총액) 이상 물품 구매 <중략>

##### 6. 선정(평가) 기준 및 방법

- 가. 학교(기관) 자체 실정에 맞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선정(평가) 기준 마련
- 나. 규격 선정: 평가표 불필요(자체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회의록에 명시)
- 다. 제품 선정: 3개 이상 제품에 대해 **【별지1】평가표(예시안)**를 활용하여 평가
  - ※ 단, 제품이 3개 미만인 경우는 회의록에 반드시 사유 명시
  - 대상: 구매 제품 단가 5백만원 이상 또는 제품별 구매총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평가표 작성
  - 학교(기관)의 여건 또는 구매 품목의 특성에 맞게 평가 기준 변경 및 평가 기준 항목 추가 가능
  - 다만,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표 구성 금지

##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소홀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 7)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 학교운동부 운영 소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29호, 2024. 10. 8. 일부개정

- 제60조의2(소위원회)**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18.]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개정 2021. 9. 24.>
1.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삭제 <2021. 9. 24.>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87호, 2023. 11. 10. 타법개정

- 제9조(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등의 계획 수립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미준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29호, 2024. 10. 8. 일부개정

-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삭제
- ③ 다음 각 호의 학교·학과·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3. 법 제48조에 따른 학교
  4. 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5. 기숙사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24호  
2024. 4. 23. 일부개정

- 제59조의2(회의 소집)**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소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5호, 2023. 12. 12. 일부개정

- 제36조(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①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영재교육원의 장은 해당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 말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영재교육을 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의 생활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되, 해당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477호, 2024. 2. 8. 일부개정

-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①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별표 9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따라 시행한다.  
 ② 초등학교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각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교과별로 문장으로 입력하되, 1, 2학년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는 통합하여 입력한다.  
 ③ 중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교과', '과목', '성취도'를 입력한다.  
 ④ 고등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을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다음의 교과(목)는 예외로 하여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1. 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2. 보통 교과 공통 과목의 '과학탐구실험' 및 전문 교과Ⅱ, Ⅲ: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3. 보통 교과의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과', '과목', '단위수', '성취도'  
 ⑤ 중·고등학교의 '비고'란에는 공동교육과정 및 학교 밖 교육 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⑥ 중·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다만, 체육·예술 교과(군) 및 전문교과Ⅱ의 실무과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1. 체육·예술 교과(군) :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2. 전문 교과Ⅱ의 실무과목 : 능력단위 기반의 과목별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3. < 삭제 >  
 4. < 삭제 >  
 ⑦ 제6항에 따른 중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입력하고,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되 세부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⑧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 중 교양 교과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수강자수)란과 '석차등

급'란에는 'P'를 각각 입력한다. 다만, 교양 교과를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 시에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수강자수)'란과 '성취도별 분포비율'란에는 'P'를 각각 입력한다. 또한,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 교양교과(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성격의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경우 과목명 및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이수여부에 'P'를 입력한다.

⑨ < 삭제 >

⑩ 전문 교과 I 및 보통 교과[공통 과목 과학탐구실험,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는 과목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하고, '석차등급'란에는 '석차등급'이나 '.'을 입력한다. 다만,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이 2과목 이상인 경우에 '석차등급'란에 '석차등급' 또는 '.' 표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입력한다.

⑪ < 삭제 >

⑫ 체육·예술계 중학교(예술·체육 중점학교 포함)에서 학생이 선택 과목으로 체육계 과목 또는 음악·미술계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⑬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원점수/과목평균'란은 '공란'으로 두고,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를 입력한다. 또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P'를 입력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체육·예술 과목은 실기능력, 교과적성 포함)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한다.

⑮ 고등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은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⑯ 고등학교에서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은 '교과', '과목', '단위수'를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을 입력한다.

⑰ 학점제를 적용받는 고등학교는 제4항, 제8항, 제10항, 제15항, 제16항의 '이수단위' 또는 '단위수'를 '학점수'로 본다.

⑱ 중학교에서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원점수/과목평균'란은 '공란'으로 두고,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를 입력한다. 또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P'를 입력한다.

## 평가계획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미심의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477호, 2024. 2. 8. 일부개정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①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별표 9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따라 시행한다.

#### [별표9] 4. 중학교·고등학교 평가 방법

가. 평가 계획 수립

(1) 교과학습의 평가 계획은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수립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다만,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에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라 해당 교과 담당 교사별로 평가 계획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평가 계획에는 각 교과(학년)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평가 영역·요소·방법·횟수·반영비율·수행평가 세부기준(배점)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을 포함한다.

(3) 확정된 평가 계획은 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한다. 또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여 평가 실시 전에 재 공시 한다.

(4) 자유학기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학교별로 자유학기의 취지에 맞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2021. 전라북도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2021. 2.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

## 2021. 전라북도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 제2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제3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학교의 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2. 학년별(학급별) 교과 평가 계획(영역·요소·방법·시기·횟수·기준 등)
3.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누가기록 방법
4.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 및 관리(평가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

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평가 내용 및 방법, 누가기록 방법
6.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자료정정 등
7.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및 홍보, 평가결과 후속조치(이의제기 등))
8. 결시자 및 학적변동자의 성적 처리 방안
9. 초등 성장평가 운영 및 통지
10. 그 밖에 학업성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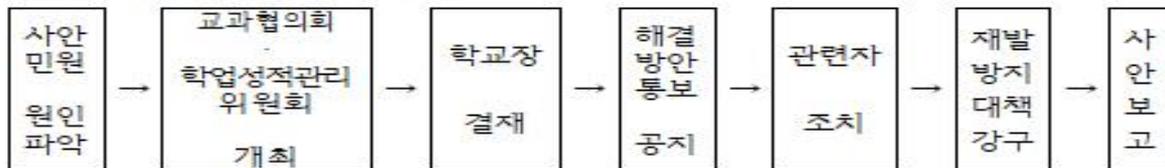
## ▣ 학업성적 평가 업무 수행(지필평가 재시험) 소홀

2023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관리 방안(중학교)

발간등록번호 전북교육 2023-220

### 평가 관련 사안(민원 포함) 발생 시 처리

#### 1. 사안(민원) 발생 시 처리 절차



※ 중대 사안(시험지 유출 등)일 경우 사안 인지 후 즉시 지역교육청에 유선 보고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 대책 결정

#### 2. 절차준수 목적

- 가. 사안(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정상적인 학사운영 지원
- 나. 학교 학업성적관리 방안체계 재정비 및 평가의 공정성·정확성·신뢰성 제고
- 다. 사안(민원)의 재발 방지를 통한 학업성적관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3. 사안(민원)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

- 가. 사안(민원)의 원인 및 문제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파악
- 나. 사안(민원)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즉시 소집
  - 관련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공정성·정확성·투명성·신뢰성에 바탕한 해결방안 모색
  - 추가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결방안 도출
- 다. 도출된 해결방안에 대한 학교장 결재
- 라. 민원인에게 해결방안 안내
  -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유선, 이메일,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안내
- 마. 관련자 조치
  - 사안에 따라 경위서 징구 및 주의·경고·징계 등 조치
  - 사립학교의 경우 관련자를 재단에서 징계
- 바. 재발방지 대책 강구
  - 사안(민원) 내용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사. 사안보고: 사안보고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하여 지역교육지원청 및 전라북도교육청 평가담당 장학사에게 보고

# □ 특수교육운영 개발화교육계획 및 지원팀 운영 소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22. 10. 18. 일부개정

**제22조(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 269호, 2022. 6. 29. 일부개정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 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23 전북특수교육운영계획

V. 3장.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일부 발체

### 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추진목적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특수교육 성과 제고

※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매 학년 시작 2주 이내 구성
  - ※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해서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지원
  - ※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가이드북」 (2019, 교육부)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사항/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일반교육 교원과 보호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충분한 안내와 의견수렴 절차 준수
-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를 학기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학생 또는 보호자, 통합학급 교사에게 통보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전학 또는 상급학교 진학 시 전출학교는 전입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소홀

### 학교체육진흥법

2021. 3. 23. 일부개정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 국가는 학생의 건강체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의 장은 실시계획에 따라 학생건강체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장은 평가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 중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평가결과 등록 및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① 학교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이하 "건강체력교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건강체력교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에게는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3.]

## □ 학교폭력,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운영 소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4. 1. 9. 일부개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교육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2. 27. 일부개정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법 제11조제13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에서 같다)와 피해학생의 분리 및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학교의 장 및 교감의 역할에 관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4. 10. 16. 일부개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및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인증

⑩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⑫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서류관리 소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4. 1. 9. 일부개정

-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 ⑨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2. 27. 일부개정

-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②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서류관리 소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70호, 2025. 1. 21., 일부개정

-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신설 2019. 8. 20.>
-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 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5. 8., 2012. 3. 21., 2019. 8. 20.>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2. 3. 21., 2019. 8. 20.>
-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 ⑨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33호, 2024. 2. 27., 일부개정

-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②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 처리 소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4. 1. 9. 일부개정

-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  
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  
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  
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인 및 심의
  3.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한  
다)을 권유할 수 있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소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관리 조례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87호, 2023. 11. 10. 일부개정

- 제5조(과학실 관리)**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 관련 게시물을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수칙
  2. 안전사고 대처요령
  3. 응급상황 처리과정
  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
  5. 응급상황 대피도
  6. 과학실 안전 점검표
  7. 물질안전보건자료
  8. 과학실 안전 관련 매뉴얼
- ② 학교장은 과학실에 밀폐형 시약장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및 학생과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  
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공가 사용 부적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34661호, 2024. 7. 2. 일부개정

**제7조의6(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제10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11. 9. 29., 2012. 8. 31., 2016. 11. 29., 2018. 12. 18., 2019. 4. 16., 2019. 12. 24., 2020. 10. 20., 2021. 11. 30., 2021. 12. 31., 2023. 12. 5.>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6은 제7조의7로 이동 <2019. 4. 16.>]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34660호, 2024. 7. 2. 일부개정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제11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12. 8. 31., 2015. 10. 6., 2016. 2. 3., 2016. 11. 29., 2018. 7. 2., 2018. 12. 18., 2019. 12. 24., 2020. 10. 20., 2021. 12. 31., 2023. 12. 5.>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 □ 병가 사용 부적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34661호, 2024. 7. 2. 일부개정

**제7조의5(병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7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1. 30.>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중전 제7조의5는 제7조의6으로 이동 <2019. 4. 16.>]

## □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489호, 2024. 3. 29. 일부개정

**제23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6.2.26, 1997.11.19, 2009.1.29., 2012.3.30., 2015.11.13., 2018.4.27.>

-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 2023.11.1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 중절에 따른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7.4.9., 2012.3.30., 2015.11.13.>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④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2.26., 2001. 12. 29., 2005.12.30., 2015.11.13., 2018.4.27.>
-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8.9.>
-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9.1.29., 2015.11.13.>
- ⑦ 삭제 <2005.12.30.>
- ⑧ 삭제 <2005.12.30.>
- ⑨ 삭제 <2005.12.30.>
- ⑩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997.11.19.>
- ⑪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7.4.9.>
-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을 포함한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2.3.30., 개정 2018.4.27.>
- ⑬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6.2.5.> <개정 2018.4.27., 2024.3.29.>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 ⑭ 공무원은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7일 이내에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재량휴업일, 방학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2.5.> <개정 2019.8.9., 2024.3.29.>
- ⑮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4.27.> <개정 2019.8.9.>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 ⑯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자녀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자녀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4.27.> <개정 2023.11.10.>
- ⑰ 군 입영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4.27.>
- ⑱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8.9.>
- ⑲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3.29.>
  1. 재난·재해 및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2. 선거업무 및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경우
  3.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 ☐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소홀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3. 14.>
- ⑦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3. 3. 14.>
-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로 본다. <개정 2023. 3. 14.>

## ☐ 문서 접수 및 등록 소홀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518호, 2024. 5. 21. 타법개정

-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 ①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이하 "접수등록번호"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중이문서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서과에서 받은 문서는 문서과에서 접수일시를 전자적으로 표시하거나 적고 지체 없이 처리과에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과는 배부받은 문서에 접수등록번호를 표시하거나 적는다.
- ③ 행정기관은 문서의 접수 및 배부 경로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처리과에서 문서 수신·발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접수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처리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⑤ 제4항에 따라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과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조직 관계 법령 또는 제60조에 따라 업무분장된 담당자 외에 그 문서의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⑥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나 행정기관이 부여한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받은 문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한 위조·변조 방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없으면 그 문서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발신자의 주소와 성명 등이 불분명할 때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학교(교비)회계 예산편성 업무 처리 소홀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①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 ②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 ⑤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학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2. 3. 21.]

### 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921호, 2024. 8. 23. 일부개정

-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학교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 ③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학교구성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4.>
  - ④ 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2016.1.4.>
  - ⑤ 삭제 <2015. 2. 27.>
  - ⑥ 삭제 <2015. 2. 27.>

- 제15조(추가경정예산)** ① 학교의 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절차 등에 있어서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6. 25.,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잔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교부 문서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수익자부담경비 징수를 결정한 문서를 예산의 성립전 사용 요구로 본다. 다만, 세출내역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 6. 25.,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제56조(예산·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② 교육청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 ☐ 예산과목 미준수

### 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921호, 2024. 8. 23. 일부개정

**제13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2. 6. 25.,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③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 2. 27.>  
 ④ 제3항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의 구분과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추가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타법개정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17. 2. 24.>  
 ② 교육감은 지역의 실정·특색과 관할 학교 및 유치원의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에 따른 예산과목 구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4.>  
 [본조신설 2011. 2. 9.]

## ☐ 학교(교비)회계 세입금 관리 소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타법개정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906호, 2024. 1. 18. 일부개정

**제53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35호 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 □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교육부 예규 제91호, 2024. 8. 1. 시행

### 4. 업무추진비(230목)

#### 【공통기준】

-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한다.
-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개산금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심야(23사·다음날 6시), 토요일·공휴일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증빙자료 작성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각종 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다과 음료 포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정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정탁금지법」을 따른다.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별표】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921호, 2024. 8. 23. 일부개정

1.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가.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학생 및 교직원 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시·도 체육대회 등에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 및 인솔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 나. 공연단, 악단, 영화·연극단, 예술단, 학술단체, 사물놀이단, 합창단, 공공기관, 언론기관 및 시범단체 등이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구역에서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및 교육·학예와 관련한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 종사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다. 교육·학예와 관련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2.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 가.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추진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 목적의 사업추진 관계자에 대한 식사 제공
  - 나.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 대한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해야 한다.
  - 다.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라. 교육활동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자매결연 학교 및 교육기관 관계자, 대사, 영사, 교민, 학생,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 대한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 마.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3.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 가.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나.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 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이나 공공기관 및 학교의 이전 또는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화환·화분 제공 또

- 는 내빈에 대한 기념품 지급
4. 교육활동·재난 피해자 및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가.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구역에서 학교폭력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및 피해 가정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나.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구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다.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구역에서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 또는 자선적 행위라.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교육 관련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5. 시책 또는 지역 홍보
    - 가.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시책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 나. 다른 기관·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및 관계자에 대한 식사 제공
    -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 라.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6.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가.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교육·학예 관련 집단민원 및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나.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주관으로 관할구역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 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소방서(파출소 포함),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기관 현장 종사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다.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하는 해당 기관 대표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7.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가.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상근직원(직속기관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직원 및 각급 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위로금품 지급
    - 나.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직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 다.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단위 평가 및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 라. 소속 상근직원 중 시설관리, 방호, 위생, 환경미화, 조리 또는 운전 등에 종사하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 마.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업무추진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식사 제공
    - 바.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사.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 또는 간부 공무원이 관할구역 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 그 기관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아. 소속 상근직원(각급 학교 교직원은 제외한다) 및 차하급기관(각급 학교는 제외한다)의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 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다과재료의 구입
    - 나. 축의·부의금품
      - 1) 지급대상 범위: 결혼 또는 사망
      - 2) 지급 대상자: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 3) 지급 명의자별 지급 대상자 구분
        -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되는 교육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 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의 대표자만 해당하며, 각급 학교 교직원은 제외한다)
        - 나) 가) 외의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의 직원만 해당한다)
          - 해당 지방의회 의원
          -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9. 그 밖에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법령 또는 조례에 미리 정해진 경우

## ☐ 여비 집행 소홀

###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제33312호, 2023. 3. 2. 일부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1. 11. 30.>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13. 1. 9.>

[전문개정 2010. 11. 10.]

### 공무원 여비 업무처리기준

#### Ⅲ.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영 제18조)

##### 2. 여비지급 기준

- 가.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 나.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 다.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라.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마.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 1)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으로 한다.
  - 2) 실비 지급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1/3)로 한정한다.
    - ※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3) 출장자는 운임과 식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 다만, 운임은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출장확인서,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버스, 전철 또는 택시 기본요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중략>

#### Ⅳ.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

##### 1. 근무지외 여비의 계산

가. 지급되는 여비항목 :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 나.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 1)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소속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단체(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 3)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여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4) 다만, 영 제16조 제1항에 따라 숙박비를 추가지급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여비등급의 상향조정을 할 수 없다.

## □ 지출원인행위 결재 소홀

### 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921호, 2024. 8. 23. 일부개정

- 제35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 ②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 ③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공급자 날인이 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출결의서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승낙사항을 지출증빙서류에 편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2024.8.23.>
- ④ 지출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5. 2. 27.>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906호, 2024. 1. 18. 일부개정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5조,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8. 2. 28.>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교육청 및 제1관서에 있어서는 교육감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있어서는 교육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다.
-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이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 10. 5.>
- ④ 학교신설의 경우에는 개교준비 사무취급자로 임명된 사람이 개교 예정학교의 회계 관직을 임명기간 동안 지정받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2. 28.> [전문개정 2016. 10. 14.]

## □ 재정보증보험 가입 업무 소홀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900호, 2023. 11. 10. 타법개정

- 제2조(정의)** 「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4., 2019.11.26., 2023.11.10.>
1. 징수관(분임징수관), 재무관(분임재무관),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등 회계관직으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4.>
  2. 제1호의 대리자, 분임자 및 보조자로서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이하 "회계보조자"라 한다)와 해당 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3조(재정보증)** ① 교육감 또는 해당 기관장은 제2조제1호의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2조제2호의 회계사무 보조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교육감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직위포괄 계약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수익자부담경비 정산내역 공개 소홀

### 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921호, 2024. 8. 23., 일부개정

제25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지체 없이 예결산 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15. 2. 27.>  
② 삭제 <2015. 2. 27.>

## ☐ 국고금 관리 소홀

### 국고금 관리법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4.]

## ☐ 학교운영위원회 인계인수 소홀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 아. 사무의 인계인수

- 1) (대상자)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명령기관,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 2) (기한)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명령기관 교체 후 14일 이내,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교체 후 7일 이내
- 3) 인계인수 사항
  -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요령 제7호 서식]
  - 사업별 수입 및 지급현황[요령 제8호 서식]
  - 기타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련 장부 및 서류
- 4) 절 차
  - 인계를 할 때에는 교체일의 전일 현재로 발전기금 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연월일을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및 입회자가 서명·날인
  -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와 인계인수 목록에 인계인수 연월일과 “인계인수를 필하였음”을 기재한 후 인계인수자 및 입회자가 서명·날인

## 장학금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업무 소홀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29호, 2024. 10. 8., 일부개정

-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5.>
1. 발전기금에 대한 결산
  2. 제1호에 따른 결산 결과의 관할청 보고 및 학부모 통지
- ⑨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 ○ 장학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은?

☞ 발전기금 내 장학금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므로, 운영위원회가 선정방법을 해당학교 장학금선정위원회 등에 위임한 경우에도 그 선정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장학금을 수여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상이 지정된 장학금 중 긴박한 수여 일정 등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심의·의결 전에 사용이 가능하다. 단, 즉시 집행하는 경우에도 운영위원장에게 사전에 구두 및 서면보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하며,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시 보고 및 심의·의결을 하여야 한다.

※ 장학금의 경우 대상을 지정하지 않았으나, 졸업식 등 행사로 인하여 지급시기가 임박할 경우에 한해 위의 예외사항과 같이 운영하되 차기 회의 심의·의결 시 대상자 선정에 관한 내용 등을 심의·의결 받아야 한다.

##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교육규칙 제906호, 2024. 1. 18. 일부개정

제114조(세입세출외현금액의 정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그 밖의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보관 중에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교육감에게 귀속하였을 때에는 법령·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즉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교육규칙 제921호, 2024. 8. 23. 일부개정

제48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 <개정 2015. 2. 27.>

1. 보증금
2. 보관금
3. 그 밖의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 □ 신분변동자 보수 지급 소홀

###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5181호, 2025. 1. 3., 일부개정

제22조(보수 계산) ①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사람의 봉급을 다시 감액하려는 경우(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서만 이미 감액된 봉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제7호의3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 중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 1. 8., 2017. 1. 6., 2018. 1. 18., 2025. 1. 3.>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 8.>

③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8.>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8.>

[전문개정 2009. 3. 31.]

## □ 교원연구비 및 학교운영수당 지급 소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5182호, 2025. 1. 3., 일부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수당등의 지급기간 중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 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 소속 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 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당을 지급할 때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 특수지근무수당,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하고, 별표 11 제3호다목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 1. 7., 2019. 1. 8.>

③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하고, 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7., 2010. 7. 26., 2010. 10. 18., 2013. 3. 23., 2013. 12. 11., 2014. 1. 8., 2014. 7. 16., 2017. 1. 6., 2017. 7. 26., 2019. 1. 8., 2020. 3. 10., 2020. 8. 25., 2021. 1. 5., 2021. 3. 30., 2024. 1. 5., 2025. 1. 3.>

1.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2호가목(연구업무수당) 5)부터 9)까지의 수당
2. 별표 11의 각 수당(제1호 기술정보수당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 및 제3호바목의 7)(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3)(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수당
3. 별표 11 제3호바목의 7)(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수당과 운전직렬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같은 별표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4. 경찰공무원 중 해양경과 또는 특임경과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가목(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5. 특허청의 심판관과 심사관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바목의 10)(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특허심사·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6. 삭제 <2010. 1. 7.>
7.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다목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의 수당
8.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라목1)부터 3)까지(개방형 직위, 공모직위 또는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의 수당
9.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11)다)(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수당
10. 군인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다목7)(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
11. 군인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가목(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다목8)(잠수함 승조원 자격 취득자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장교 및 부사관)의 수당
12.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17)(「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
13. 별표 11 제3호라목4)(「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 13의2.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다목4)의 수당
14. 별표 11 제3호바목16)(합동방재센터에서 화학 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수당
  - 가. 별표 11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 나. 별표 11 제3호바목11)가)(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수당
15.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아목(우수 대민(對民) 공무원 수당)의 수당
16. 별표 11의 각 수당(같은 별표 제3호라목4)(「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별표 제3호자목(전문직무급)의 수당
17.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바목21)의 수당
18. 별표 11 제3호바목2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과 다음 각 목의 수당
  - 가. 별표 11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 나. 별표 11 제3호사목(중요직무급)의 수당
- ④ 결근한 사람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1. 1. 10.>
- ⑤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 및 제18조부터 제18조의6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않되,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따라 금액 지급하고, 감봉기간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하며, 국외출장이나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같은 표 제2호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3)란의 수당 및 같은 표 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은 제외한다)·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월중에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가목(연구업무수당)·나목(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다목[교직수당(가산급 지급대상 중 2)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고, 군인인 항공기 조종사 및 동승 근무자가 비행임무를 목적으로 국외파견(「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2)·3)란의 수당을 지급하고, 15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인 항공기 조종사가 국외파견 또는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다목7)[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9. 3. 31., 2010. 1. 7., 2010. 7. 26., 2014. 1. 8., 2017. 1. 6., 2018. 1. 18., 2021. 1. 5., 2025. 1. 3.>
- ⑥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1. 1. 10., 2017. 1.

6., 2020. 1. 7.>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별표 11 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은 제외한다),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 1. 8., 2016. 6. 24., 2017. 1. 6., 2018. 1. 18., 2020. 1. 7.>
-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
- ⑧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는 일반직공무원 등에 준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 ⑨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3호바목21)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 12. 11., 2020. 8. 25.>
- ⑩ 재외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중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다목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대외직명대사 또는 대외직명공사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재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각각 13등급 또는 14등급에게 지급하는 수당등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 1. 7.>
- ⑪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성과급적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1. 1. 10., 2022. 1. 4.>
- ⑫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한다.
- ⑬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게는 해당 직무 분야와 유사한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신설 2017. 1. 6., 2020. 1. 7.>
- 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인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4. 1. 5.>

[전문개정 2008. 12. 31.]

##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소홀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5184호, 2025. 1. 3., 일부개정

-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 1. 15., 1999. 1. 21., 2008. 9. 10.>
-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를, 같은 영 제4조제3항·제4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 중 9급, 9급 상당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7. 9. 5., 2025. 1. 3.>
  -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1986. 1. 25., 1993. 12. 31.>
  -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2024. 1. 5.>
  -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

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 9. 28., 2021. 11. 30.>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수면·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수면·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않는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08. 1. 11., 2012. 9. 28., 2021. 11. 30.>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결정을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08. 12. 31., 2012. 1. 6., 2012. 9. 28., 2017. 1. 6., 2021. 11. 30., 2023. 1. 6.>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방법 등의 세부기준과 부정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01. 1. 29., 2008. 1. 11., 2008. 2. 29., 2008. 12. 31.,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2023. 1. 6.>

## 연가보상비 지급 소홀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5184호, 2025. 1. 3., 일부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11. 14., 2003. 1. 20., 2015. 1. 12., 2016. 1. 12.>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 또는 제6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4. 삭제 <2020. 3. 10.>
  5.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공무원
  7.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 1. 6., 2016. 1. 1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2. 1. 6., 2013. 1. 9.>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 1. 6., 2013. 1. 9.>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 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2호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 1. 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본조신설 2001. 1. 29.]

## ☐ 물품·재산관리 소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며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제60조(재물조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 ☐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소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④ 삭제 <2010. 2. 4.>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4. 2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87호, 2025. 1. 7., 일부개정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2. 4. 20., 2023. 8. 2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계산,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 21., 2022. 4. 20.>  
④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2. 4. 20.>  
⑤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 6. 21., 2022. 4. 20.>  
⑥ 제13조제6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계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 7. 12., 2017. 7. 26., 2022. 4. 20.>  
⑦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 6. 21., 2014. 7. 7., 2016. 7. 12., 2022. 4. 20.>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 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2. 4. 20., 2023. 8. 22.>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2022. 4. 20.>  
⑩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20. 12. 22., 2022. 4. 20.>